

2024년 예산 편성 기준표1)

□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.

항목		기준	사용한도	비고
강 사 비	특별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/현직 장/차관(급) 이상 전/현직 대학총장(급) 전/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(회장) 또는 국영기업체장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시간 최대 350,000원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 	
	1급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,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판/검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/5급 공무원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시간 최대 250,000원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 	<p>*단체의 대표자 및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</p>
	2급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전·현직 4/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인간문화재·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통계이론, SAS, SPSS 등의 전문가 박사학위소지자 특별강사,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시간 최대 230,000원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,000원 	<p>*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, 강사 교통비(실비)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</p>
	3급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외국어/전산 등 학원강사 체육,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시 최대 170,000원 1시 최대 170,000원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,000원 	

1) ※202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 기준 참고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•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•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자 		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5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내에서 지급 *지급증 필수 첨부 (활동명, 활동시간 및 지역, 소요비용 및 산출 근거 표기)
식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5,000원 	
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,500원 	

주) ※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

1.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

-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(주제)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